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권순선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
박기재, 신정호, 이병도,
조상호, 최 선, 홍성룡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생존 애국지사는 총 3명이며, 평균연령 95세 고령으로 이들에 공적에 대해 예우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. 하지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으로 저소득층 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화가 없으며,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.
- 이에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의 생존 애국지사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. (안 제3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2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<u>20만원</u>의 보훈명예수당 지급</p> <p>2. ~ 6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00만원</u> 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	202110120000006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10.12	
회신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○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추가비용 ≒ 144,000천원
= 800천원 × 3명 × 12개월 × 5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원상
주 무 관	이혜린

☎ 02-2180-7955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